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707

제안일자 : 2024. 4. 29.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5조의3제1항에서 옥상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, 필요 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○ 안 제5조의3제1항 중 “옥상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”를 “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, 필요시”로 수정함(안 제5조의3제1항).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3제1항 중 “옥상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”를 “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, 필요시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5조의3(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)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」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**옥상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경우**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제5조의3(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) ① ----------**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, 필요시** ----------. 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)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」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,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3(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)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」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,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